

외교부령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외교부장관)
연 월 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지문 제공 예외 대상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실무의 근거 조항 마련 및 미비점 개선·보완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내용 반영

- 1) 여권 발급 등 신청 시 제출서류에서 병역 관계 서류 삭제(제4조)
- 2) 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이 어려운 유형(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국외 위난상황 등으로 대면이 곤란한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제5조의2)

나. 현행 실무의 근거 조항 마련 등 미비점 정비

- 1) 여권 로마자성명 표기·변경 관련 조항의 의미 명확화 및 제출서류 상세 규정(제2조의2)
- 2) 여권 발급 대리 신청 관련, △의전상 대리 신청이 가능한 사람에 전·현직 대통령의 배우자 추가, △대리인 요건과 제출서류를 여권 발급 신청인에 따라 분류·명확화(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심사 예정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영 제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국외”를 “국외”로, “로마자성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를 “로마자성명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으로, “기존”을 “해당 로마자성명을 제1항의”로, “변경하려는 로마자성명을 함께”를 “함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배우자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이하 “로마자 성”이라 한다)은 “spouse of 배우자 로마자 성” 형식으로 여권에 표기한다.

④ 여권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람 중 상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로마자 표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각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로마자성명을 여권에 함께 표기하지 않으면 국외 체류나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
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등 배우자의 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로마자성명의 변경 또는 정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로마자성명 변경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조의2제2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제1호와 동일
2. 영 제3조의2제2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가족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해당 가족의 여권에 쓰인 로마자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영 제3조의2제2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제2호와 동일
4. 영 제3조의2제2항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영 제3조의2제2항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6. 영 제3조의2제2항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이주 허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7. 영 제3조의2제2항제10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로마자성명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입국규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8. 영 제3조의2제2항제1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출입국

또는 국외 체류를 위하여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

⑥ 외교부장관은 상기 제4항 및 5항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산정보자료의 확인(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인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등본·초본, 출입국사실증명서(여권의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등본·초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병적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문 제공 예외 대상) 영 제4조제2항제3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로서 지문자료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2.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사람
3. 국외 위난상황 등으로 인하여 재외공관 방문 등을 통한 지문 제공이 어렵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제1항제1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18세 이상으로서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같은 항 제2호·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나. 배우자로서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다. 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제4조에 따른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교
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시

나.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제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나.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제출. 다만 법
정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
에 관한 증명서 제출(외교부장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
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만 제출한다)

라.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대리사유 증명서류 제출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제출. 다만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
에 관한 증명서 제출(외교부장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
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만 제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 · 변경 등) ① (생 략) ② 여권 발급 신청인이 영 제3 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국외 에서 이미 사용한 로마자성명으 로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로 마자성명이 가족관계등록부 상 의 한글성명에 대한 로마자표기 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 로마자 성명 앞 또는 뒤에 변경하려는 로마자성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 른 배우자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이하 “로마자 성”이라 한다) 의 추가나 변경 신청을 받은 외 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서 관리하는 전산정보자료의 확 인(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주민등 록표 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 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 · 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외----- ----- ----- 로마자성명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 ----- ----- 해당 로마자 성명을 제1항의 -- 함께 ----- ----- ----. ③ ----- ----- ----- 한다)은 “spouse of 배우자 로마자 성” 형식으로 여권에 표기한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배우자의 로마자 성은 “spouse of 배우자 로마자 성” 형식으로 여권에 표기한다.

<신 설>

④ 여권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람 중 상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로마자 표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각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로마자성명을 여권에 함께 표기하지 않으면 국외 체류나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

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등 배우자의 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로마자성명의 변경 또는 정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로마자성명 변경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조의2제2항제2호의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제
1호와 동일

2. 영 제3조의2제2항제3호의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
록표 등·초본이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가족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
는 자료, 해당 가족의 여권에
쓰인 로마자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영 제3조의2제2항제4호의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제
2호와 동일

4. 영 제3조의2제2항제6호의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
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영 제3조의2제2항제7호의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국
사실증명서

6. 영 제3조의2제2항제9호의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이
주 허가 사실을 증명하는 자
료

7. 영 제3조의2제2항제10호의

<신 설>

제4조(여권의 발급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① 영 제5조제1항 제3호(영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8조제4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로마자성명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입국규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8. 영 제3조의2제2항제1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출입국 또는 국외 체류를 위하여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
 ⑥ 외교부장관은 상기 제4항 및 5항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산정보자료의 확인(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인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여권의 발급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① -----

호(영 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14조제4호 및 영 제18조제4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관계 서류(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3. (생략)

4.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출입국사실증명서(여권의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등 재발급받으려는 여권에 수록된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

5. 6. (생략)

② 여권을 발급하는 해에 18세 이상 37세 이하가 되는 남자가 일반여권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병역관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

-----.

<삭 제>

2. 3. (현행과 같음)

4. -----

----- 등본·초본 -----

5. 6. (현행과 같음)

<삭 제>

까지 「병역법」 제70조에 따
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
함한다)은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발행하는 국외
여행허가서 1부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은 향토예비군 편성확인서, 병
적증명서, 병역(전역)증서본
또는 읍·면·동의 장이 발행
하는 병적증명 서류 등 1부

③ 여권의 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병적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족
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국외여행허가서 또는 장애인증
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외교부장관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
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
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
여야 한다.

③ -----
----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④ 삭 제

⑤ ~ ⑦ (생 략)

<신 설>

제6조(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

①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국
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지문 제공 예외 대상)

영 제4조제2항제3호에서 “외교
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
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로서 지
문자료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2.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사람
3. 국외 위난상황 등으로 인하
여 재외공관 방문 등을 통한
지문 제공이 어렵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

① -----

1. -----
-----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
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
다 고 인정하는 사람

2.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대리
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18세 이상으로
서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이어야 하며, 같은 항 제2호·
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
야 한다.

1.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
인

2. 배우자

2. 3. (현행과 같음)

② -----
-----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가.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
리인

나. 배우자로서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다. 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신청
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
임을 받은 사람

3.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주민
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
권 등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신
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
을 내보여야 하며, 신청인의 신
분증 사본(제2항제1호 외의 사
람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
임장 및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에서 대리관계 및 그 사유를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야 한다.

<신 설>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가.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
리인

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신
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제4
조에 따른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
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교부장관이 정
하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외교부장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하 같다) 제시

나.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제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나.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제출. 다만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출(외교부장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라.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대리사유 증명서류 제출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제출. 다만

4. <u>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u>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로 한정한다)	<u>법정대리인이 대리하는 경 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u> 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 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 서 제출(외교부장관이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동의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제 출한다) <삭 제>
---	--